

의안번호	2216059
의 퇴 인	김영진의원
회 답 일	2026.3.6.
추계번호	26D019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500만원(연평균 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보호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20조의3)	5	5	5	5	5	25	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0조의3(보호심의위원회)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호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재량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0조의3(보호심의위원회)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20조의3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는 보호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수는 7명이며, 이 중 민간위원은 5명¹⁾으로 가정
 - 연 4회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회당 25만원²⁾으로 가정
 -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보호심의위원회 설치(안 제20조의3)

- 안 제20조의3에 따라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00만원 등 5년간 총 2,500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5명의 민간위원에게 회당 25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연 4회 회의를 한다고 가정
 - (연간 소요) 민간위원 5명 × 25만원 × 연 4회 = 500만원

1) 개정안 제20조의3(보호심의위원회)

② 보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호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보호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 밖에 공익신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2)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만원을 지급하되,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추가 편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검토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표 2] 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호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20조의3)	5	5	5	5	5	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추계 결과

-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2,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호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20조의3)	5	5	5	5	5	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 없음

V. 작성자

-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